

# 직장인 3대 갑질 ‘괴롭힘·야근·징계’

### 직장갑질119 이메일 제보 분석 4개월 600건 접수...괴롭힘 1위 휴가·야근 및 징계·해고 등 2위

“5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당해 힘들어요. 욕상에서 뛰어내릴 생각도 몇 번 했습니다. 시끄럽게 만들었다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다니는 게 지옥입니다.”

직장인이 겪는 갑질 중 가장 많은 유형이 괴롭힘, 야근, 징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4월 3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이 겪는 3대 갑질은 괴롭힘과 야근, 징계·해고였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한 제보 607건 중 괴롭힘이 372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시간·휴가와 징계·해고도 각각

168건(27.7%), 임금 139건(22.9%), 근로계약 88건(14.5%), 젠더폭력 55건(9.1%)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제보된 괴롭힘 372건을 유형별로 보면, 따돌림·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 외 강요 31건(8.3%) 순으로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10개월이 지났는데 폭행, 폭언 등 극단적 괴롭힘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제보자는 “자기 기본이 좋지 않을 때 계속되는 폭언에 불면증이 심해

져 정신과에 다녀오려 한다”고 토로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해도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사건 372건 중, 제보자가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건수는 163건이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75건(46%)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가 보복갑질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163건 중 107건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사·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지 즉시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누설 금지 등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한 제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내 신고 후 인사과는 가해자와의 분리를 이유로 재택근무를 권유했고, 1년 넘게 하고 있다”며 “인사위원회도 1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가해자인 팀장이 보복성으로 가장 낮은 고과를 부여해

연봉이 동결되는 등 2차 가해를 당했는데 인사과는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달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왔다는 응답자 중 63.9%가 신고 이후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33.3%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만연한 괴롭힘 등 갑질을 해소하기 위해선 ‘노동법 위반 삼진아웃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불법야근, 임금체불, 부당징계, 육아휴직 등 노동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오유나 기자



### 강진소방, 옹천면 신월 구곡마을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지난 4월 27일 강진군 옹천면 신월마을화곡관에서 최기정 강진소방서장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 담양소방, 봄철 산악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실시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최근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와 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일대에서 119구조대원 30명, 본서 직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악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 무안소방, 피난약자시설 피난안전성 확보 안내

무안소방서(서장 김용호)는 최근 관내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피난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소자 피난방법 및 피난동선 반복 숙지, 시설별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등을 실시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진도소방, 의용소방대 마을안전지킴이 운영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마을별로 소방안전관리를 통해 화재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의용소방대 마을안전지킴이 제도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 여수경찰, 편의점 결제단말기에 112신고 버튼 스티커 제작 배부

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최근 여수시 관내 전 편의점 30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위험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수=김현근 기자



### 해경교육원, ‘공무직 근로자와 함께하는 즐거운 간담회’ 개최

해경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지난 4월 28일 오전 교육원 내 강당에서 여인태 교육원장과 공무직 근로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소통·나눔 즐거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김재환 기자

## 건보공단, 멋대로 법 해석해 재난 의료비 지급 안했다가 패소

### 뇌졸중 환자 대학병원 치료 중 숨져, 유족과 진료비용 산정 두고 입장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을 어기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의료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법을 잘못 해석해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재난적 의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어머니는 2019년 4월 뇌졸중으로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치료 받다 2021년 3월 숨졌다.

A씨의 어머니는 입원 중 과잉 진료 여부와 진료비의 구체적인 금액 등을 놓고 전남대병원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전남대병원은 2020년 10월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민사소송 중 어머니가 숨지면서 소송을 이어받았다.

A씨는 2021년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신청했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 판결이 확정된 이후 결과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가 지급될 수 있게 지급 신청 기한을 유예해달라는 취지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전남대병원원에 실제 납부한 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의료비 부담 수준 미충족)로 재난적 의료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A씨는 이의 제기와 행정심판이 각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지출의 의미를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 당시 병원에 의료비 납부 의무는 부담하고 있으면서 향후 상당한 기간에 의료비가 확정되는 경우도 포함해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이 규정하는 지출은 지원 대상자가 실제 의료비를 낸 경우, 의료비 지급

채무가 확정됐으나 아직 납부하지 못한 경우, 소송이 확정된 이후 납부할 의료비가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납부 의무가 있느냐 소송으로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례를 포함한다”고 봤다.

이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취지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지원 대상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으로 규정하는데, A씨의 어머니는 수급자다. 1회 입원 진료에 따른 비용도 80만 원을 초과해 시행령상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약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의 지출 의무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만 한정하면, A씨는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의료비 납부를 강제당해 사실상 이 사건 민사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난적 의료

비 지원법 입법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공단 주장대로라면, 국민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이 같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라도 의료비 일부를 의료기관 등에 당장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은 공단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보다 경제적인 사정이 더욱 열악한 사람은 의료비를 실제로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의료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에 스스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환수·징수 조처를 할 수 있는 점까지 종합하면, 건강보험공단이 (A씨 어머니가) 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최이슬 기자



### 조형물과 함께 치러지는 전주국제영화제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가 한창인 4월 30일 전북 전주시 전주영화의거리가 영화제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한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가 한

창인 4월 30일 전북 전주시 전

## 뽕야유회 숙소 복귀하다 추락해 수술중 사망...“보훈대상자 아냐”

### 고인의 모친,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신청

추락 사고로 군병원에서 수술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군인에 대해 대법원이 보훈대상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족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상고심에서 보훈대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육군 단기복무부사관 하사로 복무하던 A씨는 2003년 7월17일 소속 부대 중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독신자 간부숙소로 복귀하던 중 숙소의 출입문 열쇠가 없어 옥상에서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 높이 12m 아래로 추락했다.

인근 대학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두개골 기저부 골절부터 우측 뒤꿈치 뼈 분쇄골절, 좌측 다리뼈 분쇄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군병원으로 이동해 분쇄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전신마취에서 각성시키는 회복 과정에서 부정맥 증상과 심정지

가 발생했고, 응급 심폐소생술까지 진행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모친인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1심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대상자 등록신청 거부에 대해 “망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예비적 청구 부분인 보훈대상대상자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을 뒤집었다. 2심은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것은 군인이 전투력을 회복해 그 직무인 병역에 복귀할 목적으로 임하는 준비행위”라며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훈대상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뉴시스